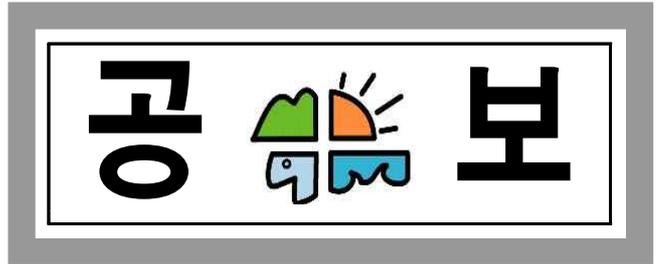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34호 2021년 7월 9일(금)

조 례

-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53호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노동조합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3. 협의회 구성 단체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장비 및 시설 지원사업
4.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54호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제4호의 사업선정을 위한 협의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결록

제6조제1항 중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주민복지증진”을 “주민복지증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폐기물감량화”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주민 편의시설 사용료”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19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목욕탕			목욕탕+찜질방		
	대 인	소 인	경로우대	대 인	소 인	경로우대
사 용 료	6,500	4,000	5,000	9,000	6,000	6,000

비고

1. “소인”은 만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우대”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15.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7. 15. ~ 2021. 7. 29.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7.8.)	김○옥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6/1	건축물 미존재	동명동 466-3	지상 1층 목조 주택 53.98㎡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7.8.)	조○옥	강원도 속초시 교동 764-32	건축물 미존재	교동 764-32	지상 1층 시멘트벽돌조 주택 68.2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7.8.)	황○원	강원도 속초시 교동 740	건축물 미존재	교동 764-32	지상 1층 목조 주택 30.24㎡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